

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-6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3. 3 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근거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준용 근거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
(안 제4조제1호, 제2호, 제6호, 제7호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조제2호중 “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”를 “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”로 하고, 같은조제6호중 “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”을 각각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7호중 “전문직공무원규정”은 “계약직공무원규정”으로 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”은 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”으로 한다.

1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8조 및 제29조중 “소속장관” 및 “소속기관의 장”은 각각 “시장”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동두천시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및 제3조중 “국내여비규정”을 각각 “공무원여비규정”으로 한다.

신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후
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(생략)	제4조(징수관의 직무위임) (현행과 같음)
1.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8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시장”으로 본다.	1.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8조 및 29조 중 “소속장관” 및 “소속기관의 장”은 각각 “시장”으 로 본다.
2.제17조1항 단서중 “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 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	2. “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 여”
3. ~ 5.(생략)	3. ~ 5.(현행과 같음)
6. 제29조제1항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 과 협의하여 ” 및 동 조 제2항중 “행정자치 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	6.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
7. [별표 1]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“연구직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은 “지방연 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”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“공무원보수규정” 은 “지방공무원보수규정”으로,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“전문직공무원규정”은 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”으로 한다.	7. “계약직공무원규정 ” . . . 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”